

2014 총회 보고서

일시 : 2014. 2. 21(금) 16:00

* 장소 : 사랑의교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 705호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servekorea.org kdkd1225@hanmail.net

목 차

● 2014	순서	3
● 2014 정기총회	순서	4
A. 조직		
1. 회원명부	5
2. 법인이사명부	7
3. 임직원명부	7
B. 회의록		
1. 총회	10
2. 이사회	12
C. 2013년 사업보고	14
D. 2013년 감사보고	28
E. 2013년 결산보고	30
F. 2014년 사업계획	34
G. 2014년 예산(안)	36
H. 부록		
1. 정관	37
2. 회칙	44

개회예배

▣ 일시 : 2014. 2. 21(금) 오후4시

▣ 인도 : 오정현 목사(월드디아코니아 이사장)

목 도 다 같 이
 찬 송 <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다 같 이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앞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 이전에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 도 한태수 목사(상임단장)

말 씬 손인용 목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

찬 송 < 449장 예수 따라가며 > 다 같 이

1.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2.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3.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축 도 이종복 감독(인천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회장)

정기총회

: 김삼환 목사(대표회장)

1. 의장인사
2. 회원점명 최이우 목사(상임단장)
3. 회순채택 다 같 이
4. 2013년도 사업보고(p.14) 김종생 목사(사무총장)
5. 2013년도 감사보고(p.28) 김광한 장로(감 사)
6. 2013년도 결산보고(p.30) 이창연 장로(회 계)
7. 2014년도 사업계획(안) 보고(p.34) 김종생 목사(사무총장)
8. 2014년도 예산(안) 보고(p.36) 김종생 목사(사무총장)
9. 사무총장 이임/취임
10. 기타안건 회 원 중
11. 광 고
12. 폐회기도 김경원 목사(상임단장)

A. 조직

1. 회원명부

(세계빈곤퇴치회)	김요셉(선린교회)	박광석(일산벤엘교회)
강영만(진흥교회)	김요셉(원천(침례)교회)	박권배(상도교회)
강용규(한신교회)	김용상(원주제일교회)	박귀영(한영신대사회복지학과)
강인석(시흥평안교회)	김원광(중계충성교회)	박동찬(일산광림교회)
강준모(남성교회)	김원교(참좋은교회)	박래창(예장통합총회사회봉사부)
강춘길	김원호(석삼침례교회)	박명성(성신교회)
고경환(순복음원당교회)	김윤석(좋은이웃교회)	박삼열(송월교회)
고명성(추점교회)	김은섭(도봉교회)	박상완(신갈백향목교회)
고미란(푸른잎사귀봉사단)	김은호(오륜교회)	박상철(예일교회)
곽주환(베다니교회)	김인기(성장교회)	박순영(장충단교회)
구자영(안성성결교회)	김인중(안산동산교회)	박용호(복수원교회)
권오륜(발음교회)	김정규(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박원호(주님의교회)
권태경(영동은혜교회)	김정서(제주영락교회)	박유철(충주서남교회)
권태경(백합노인복지센터)	김정석(광림교회)	박응순(주안중앙교회)
김경수(안동벤엘교회)	김정일(한국노인대학총연합회)	박정근(부산영안침례교회)
김광본(연합총회)	김종엽(가현교회)	박종언(예장합신 총무)
김광석(㈜참존 회장)	김종웅(부평제일교회)	박종천(가나안의 집)
김근상(서울주교좌성당)	김종준(꽃동산교회)	박지태((재)장기재산기증협회)
김근중(수원늘푸른교회)	김종훈(월곡교회)	박진구(안디옥교회)
김대근(숭실대학교)	김준수(천안하늘중앙교회)	박진석(기쁨의교회)
김덕주(기독교선교햇불재단)	김준수(성덕중앙교회)	박창환(꿈꾸는교회)
김득린(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찬곤(안양석수교회)	박천웅(안산이주민센터)
김득연(동성진흥)	김창배(영광교회)	박천일(전 CTS사목)
김명현(이천순복음교회)	김철봉(부산사직동교회)	박현식(대길교회)
김문훈(포도원교회)	김치성(통합교육부총무)	박홍철(분당매일교회)
김병민(충남동산교회)	김한중(연세대학교)	방수성(시흥교회)
김병삼(만나교회)	김형준(동안교회)	방원철(성광교회)
김봉태(수원영원교회)	김혜경(백석대 사회복지학과)	배성식(수지영락교회)
김상길(기하성총회협동총무)	김호민(대전권능교회)	배숙한(종교감리교회)
김상복(소망교회)	나진균(월곶제일감리교회)	배윤규(한국기독교사회복지관협회)
김상현(부광교회)	노태철(제일성결교회)	배진기(포항안디옥교회)
김성식(순복음부흥교회)	류두현(나사렛교회)	백광진(잠실동교회)
김성원(광주중흥교회)	류영모(한소망교회)	백인범(새사랑교회)
김성철(백석대 사회복지학과)	류종훈(한세대 사회복지학과)	백종윤(청학영락교회)
김수웅(한국기독실업인회)	림형석(평촌교회)	서도형(홍은교회)
김영수(영일교회)	명성훈(순복음성시교회)	서임중(포항중앙교회)
김영진(민주통합당)	모상련(목포주안교회)	서정오(동승교회)
김영철(장수마을교회)	문강원(원천교회)	서호석(창천교회)
김영현(은평감리교회)	박경배(송촌장로교회)	성열준(부산디지털대학교)

(충무교회)	이근수(홍성교회)	정 권(예가원)
손달익(서문교회)	이기우(감람교회)	정근두(울산교회)
송귀옥(목포영락교회)	이만식(장로회신학대학교)	정덕훈(영광교회)
송기식(수원성결교회)	이문희(맑은샘광천교회)	정명철(도립교회)
송태근(강남교회)	이상일(삼선교회)	정명호(혜성교회)
신동헌(영락사회복지재단)	이성우(미국LA우리민족돕기)	정무성(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신상현(울산미포교회)	이수영(새문안교회)	정연철(양산삼양교회)
신성남(예수가족교회)	이순천(안중양교회)	정영교(산본양문교회)
신용한(국제기독실업인회)	이승영(새벽교회)	정영환(기독교IPTV)
신정호(동신교회)	이승희(반야월교회)	정우겸(완도성광교회)
안강희(GAP 국제대표)	이영식(분당영광교회)	정우담(예성총회 사회복지부)
안기성(거리의천사들)	이인선(열림교회)	정철옥(아름다운교회)
안요셉(글로리아교회)	이재옥(화평교회)	정필도(수영로교회)
안용운(온천교회)	이재원(종로종합사회복지관)	정현구(서울영동교회)
안희목(공주꿈에교회)	이재훈(은계교회)	조경열(아현교회)
양인평(로고스법무법인)	이정우(지구촌교회사회복지부)	조남선(배푸는공동체)
양재성(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재훈(어린이재단/한국자원봉사협의회)	조석인(사랑과행복나눔재단)
양해규(굿월스토어)	이종관(울산시민교회)	조성철(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어덕선(열방교회)	이종윤(서울교회)	조원근(아현교회)
엄신형(중흥교회)	이종현(기독교연합봉사회)	조이철(기성사회복합의회)
엄현섭(기독교한국루터회)	이주형(오정성화교회)	조재호(고척교회)
여성삼(천호동교회)	이준성(역촌교회)	조한권(전하리교회)
오영택(월드비전교회)	이준우(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오진석(하나성결교회)	이철호(강성교회)	주경선(밀알의집)
원준희(사도교회)	이치우(합동)	주현신(과천교회)
유관재(성광교회)	이태훈(수원동부성폭력상담소)	지관해(서울복음교회)
유기성(선한목자교회)	이학영(한국YMCA)	지성엽(대전산성교회)
유만석(수원명성교회)	임석영(고덕중앙교회)	차정규(신양교회)
유성희(대한YWCA)	임영섭(수원은혜교회)	채영남(본향교회)
유인석(과천소망교회)	장경덕(가나안교회)	채이석(비전교회)
유재필(순복음노원교회)	장덕만(동암교회)	최대석(일산소망교회)
육순중(성북교회)	장덕순(이리신광교회)	최병국(총회세계선교회복지위원장)
윤재철(대구중앙교회)	장봉생(서대문교회)	최부옥(양무리교회)
윤지환(안보와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장 빈(동광교회)	최성재(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윤희구(창원한빛교회)	장영일(범어교회)	최완규(영천감리교회)
이강호(봉천성결교회)	장운계(한국복지목회협의회장)	최용준(보성읍교회)
이건영(인천제2교회)	장희열(순복음부평교회)	최일도(다일복지재단)
이경립(전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전삼광(인천내동교회)	최임곤(신일교회)
이경희(윤영노)(하늘중앙교회)	전성원(한기총 공동회장)	최종천(분당중앙교회)
이규석	전숙희(한국민족문화교육원)	최충하(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무)
이규왕(수원제일교회)	전운원(석천광명교회)	최한주(푸른숲교회)
이규환(부천목양교회)	전현표(상동사랑교회)	최홍규(가리봉교회)

(은파교회)	한진환(서문교회)	황문찬(세검정교회)
하금석(예랑교회연안선교회)	허태성(강변교회)	황선엽(구세군대한본영)
하상훈(생명의전화)	현해춘(등마루교회)	황영일(기독교IPTV)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홍문수(신반포교회)	황우여(한나라당)
한준석(세종제일교회)	홍향표(경목총회사무총장)	

(*가나다 순)

2. 법인 이사 명부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박종삼(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조규환(엔젤스 헤븐)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손인웅(덕수교회)	지형은(성락성결교회)
김삼환(명성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최이우(종교교회)
김성이(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최희범(한국교회희망봉사단)
김종생(한국교회희망봉사단)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한태수(은평성결교회)
박은조(은혜샘물교회)	이규학(인천제일감리교회)	
민경자(전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장경준(선한이웃네트워킹)	

3. 임직원 명부

(06)

방지일(영등포교회 원로목사)	김선도(광림교회 원로목사)	조종남(장충단교회 명예목사)
김장환(FEBC 극동방송)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이윤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 문(17)

길자연(한기총, 왕성교회)	김동권(진주교회 원로목사)	김명혁(강변교회 원로목사)
김상복(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박경조(대한성공회 광구장 주교)	박종순(충신교회)
손봉호(서울문화포럼표)	신경하(감리사회복지재단)	안영로(광주서남교회)
윤석전(연세중앙교회)	장차남(온천제일교회 원로목사)	전광표(구세군대한본영)
전병금(강남교회)	전병호(군산나운복음교회)	정근모(한국전력공사 고문)
최성규(인천순복음교회)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남북나눔)	

지도위원(34)

감경철(CTS기독교TV)	고용수(대구제일교회)	고 훈(안산제일교회)
김은기(극동방송)	노승숙(국가조찬기도회)	신화석(안디옥성결교회)
이동원(지구촌교회)	이용호(서울영천교회)	이재천(CBS기독교방송)
이정익(신촌성결교회)	이종복(은혜감리교회 원로목사)	최낙중(해오름교회)

현직교단장

고신, 구세군, 기감, 기성, 기장, 기침, 기하성, 나사렛, 대신, 루터교, 백석, 성공회, 예성, 합동, 통합, 합신, 중앙, 개혁총연, 개혁, 합동개신, 합동중앙, 합동개혁A

*

김삼환(명성교회)

공동대표(30)*

강승삼(한국세계선교협의회)
김동배(연세대사회복지대학원)
김유수(광주월광교회)
박성철(신원그룹)
박종화(경동교회)
송기성(정동제일교회)
원팔연(전주바울교회)
이신웅(신길교회)
이철신(영락교회)
최홍준(호산나교회)

권태진(군포제일교회)
김수지(서울사이버대학교)
김인환(성은감리교회)
박은조(은혜샘물교회)
서재일(원주영강교회)
양병희(영안교회)
이봉관(서희건설)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정주채(향상교회)
피영민(강남중앙침례교회)

김경원(서현교회)
김양원(신망애복지재단)
단필호(기독교연합봉사회)
박종삼(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손인웅(덕수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이성희(연동교회)
이재창(수원순복음교회)
최이우(종교교회)
한태수(은평성결교회)

상임단장(07)*

김경원(서현교회)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한태수(은평성결교회)

양병희(영안교회)
이철신(영락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최이우(종교교회)

사업단장(07)*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오정호(새로남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박홍자(맛샘캐터링)
윤성원(삼성제일교회)

소강석(새에덴교회)
윤호균(화광교회)

공동단장(15)*

권창영(전주예수병원)
박성민(한국CCC)
서철(상동교회)
오정호(새로남교회)
윤성원(삼성제일교회)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박윤석(청주우암교회)
소강석(새에덴교회)
옥성석(충정교회)
진희근(승리교회)

김홍규(인천내리교회)
박철규(새마음교회)
송종완(수원삼일교회)
유영완(하늘중앙감리교회)
황형택

기획위원(0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CBS기독교방송

한국기독교총연합회
CTS기독교TV

교단장협의회
국민일보

총무*

최희범(한국교회희망봉사단)

(04)*

조성기(WCC준비위원회)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최길학(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교단총무

교단 현직 총무

협동총무(14)

김민섭(한국의료복지선교회)

김범곤(예수사랑선교회)

김성수(예장대신사회부)

김일환(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김해성(성남외국인노동자교회)

박원영(서울나들목교회)

서경기(한아봉사회)

양세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육광철(예장합정사회복지위원회)

이상화(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이승열(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이효상(미래목회포럼)

정신천(한국장로교복지재단)

한상엽(기독교연합봉사회)

서 기(02)*

지형은(성락성결교회)

정승룡(늘사랑교회)/부서기

회 계(01)*

이창연(스포츠서울INB)

감 사(02)*

김광한(김광한세무사회계사무소)

박홍자(맛샘캐터링 한국급식협회)

사무총장

김종생

사업위원회(08)

재해구호, 사회복지, 학술, 국제, 자원봉사, 북한지원사업, 홍보·출판, 사회복지엑스포

지회(12)

강원남부, 경기남, 경기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 부산경남, 서울, 울산, 인천, 충남, 충북

B. 회의록

1. 총회 회의록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총회 회의록

□ 2013년 2월 19일(화) 13:00-15:30 / 종교교회 2층 채플실

■ 1부 개회예배

상임단장 최이우 목사의 사회로 찬송가 382장을 제창 하고, 공동대표 정정섭 장로의 기도와 이사 이은화 권사의 성경봉독 후 상임단장 한태수 목사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을 본문으로 “벌어진 틈새를 메워주기”를 제목으로 설교하다. 찬송 455장을 제창한 후 공동대표 박종삼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친다.

■ 2부 이주민 선교 기초조사 발표 세미나

좌장 김성이 교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의 사회로 책임연구원 황홍렬 교수(부산장신대 선교학)가 발제한 후,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와 서기원 목사(디아스포라 몽골리안 네트워크)가 토론자로 발언하다.

■ 3부 정기총회

1. 의장인사

고향의봄 찬양단·평화예술봉사단 공연 후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가 의장인사를 하다

2. 동역기관 및 동역자 소개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가 동역기관 및 동역자를 아래 순서대로 소개하니, 단상에 올라 각각 인사말을 하다.

김봉대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제정연대회의 고문

이성호 장성금천농장

이태현 동자동 사랑방공제협동조합 이사장

윤미향 한국장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 소형 소녀상 전달(윤미향 → 김삼환)

나경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장

박홍순 (사)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사무총장

유미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획실장

이충연 외 6명 용산참사 특별사면 석방자

3. 회원점명 및 개회선언

의장이 회원을 유인물대로 점명하니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4.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 가부를 물으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5. 2012년 사업보고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가 2012년 사업을 보고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2012년 감사보고

감사 김광한 장로가 2012년 감사 결과를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2012년 결산보고

부회계 박홍자 장로가 2012년 결산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8.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총무 최희범 목사가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9. 이사회 부의안건

가. 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임하기로 가결하다

(1) 이사장 취임 (임기2013.2.19~2016.2.18)

손인웅 ※ 이사장 손인웅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2) 이사 취임 (임기2013.2.19~2016.2.18)

박종삼 오정현 고명진 김삼환 김동배 최희범 최이우 민경자

나.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의 전개를 허락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임원회 및 실무에 맡겨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다. Haiti 사업 및 아래 재정을 월드디아코니아로 이관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 월드디아코니아 기본자산 오천만원(₩50,000,000)

(2) 아이티 사업비 이십삼억삼천사백오십만팔천이백삼십팔원(₩2,334,508,238)

※ 단, 아이티 사업비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2013년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재정집행은 기사협에서 집행하고, 그 잔액을 이관하는 것을 허락하다.

라.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Diakonia Korea>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임원회와 실무에게 맡겨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마. Korean Diakonia 사명선언문·정책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임원회와 실무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10. 폐회

의장이 기타안건 여부를 물으니 없느니라, 폐회를 제안하니 만장일치로 허락하매 마무리기도 후 폐회하니 같은 날 15시 30분이었다.

2013년 2월 19일
대표회장 김삼환
이 사 장 손인웅
서 기 지형은

2. 법인 이사회 회의록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 2013년 2월 19일(화) 11:05-12:16 / 종교교회 기획위원회실

■ 경건회

이사장 손인웅 목사의 사회로 이사 조규환 장로의 기도 후 찬송가 70장을 제창 후,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경건회를 마치다

■ 회의

1. 회원점명 및 개회

이사장 손인웅 목사의 사회로 회원을 점명하니 참석 13명, 위임 6명, 배석 3명으로 정관 24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니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다.

- 참석 : 손인웅 김삼환 박종삼 이은화 장경준 김성이 조규환 김동배 최희범 이규학
김종생 한태수 오정현(代정병화)
- 위임 : 고명진 박은조 우창록 지형은 이영훈, 김수지
- 배석 : 최이우(상임단장) 김광한(감사) 박승철(사무국장)

2. 전회의록 채택

이사 김종생 목사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총회보고사항 심의

- 가. 2012년 사업보고를 이사 김종생 목사가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나. 2012년 감사 및 결산보고를 감사 김광한 장로가 낭독하니, 서면으로 받기로 가결하다.
- 다.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 김종생 목사가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총회 부의사항 의결

가. 임기만료가 만료된 이사를 총회 날짜로의 신임을 추천하기로 가결하다.

(1) 이사장 취임 (임기2013.2.19~2016.2.18)

손인웅 ※ 이사장 손인웅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2) 이사 취임 (임기2013.2.19~2016.2.18)

박종삼 오정현 고명진 김삼환 김동배 최희범 최이우 민경자

나.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의 전개를 허락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실무에 맞게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다. Haiti 사업 및 아래 재정을 월드디아코니아로 이관하기로 하고, Haiti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의 추진 및 재정결재는 기존대로 사무국에서 주관하기로 가결하다.

(1) 월드디아코니아 기본자산 오천만원(₩50,000,000)

(2) 아이티 사업비 이십삼억삼천사백오십만팔천이백삼십팔원(₩2,334,508,238)

※ 단, 아이티 사업비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2013년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재정 집행은 기사협에서 집행하고, 그 잔액을 이관하기로 하다.

라.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Diakonia Korea>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실무에게 맡겨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마. Korean Diakonia 사명선언문·정책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실무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5. 폐회

이규학 이사의 기도 후 폐회하니 같은날 오후 12시 16분이었다.

2013년 2월 19일

이사장 손인웅
서 기 지형은 代 김종생

C. Korean Diakonia 2013년 사업보고

1.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 가. 일 시 : 2013년 1월 26일(토) ~ 29일(화), 3박4일
- 나. 진행장소 : 가평 필그림하우스, 양주수련원, 발리관광호텔, 안성수양관
- 다. 참여교회 : 지구촌교회(스웨덴), 창동염광교회(핀란드), 명성교회(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랑의교회(싱가폴, 아르메니아, 엘살바도르)
- 라. 주요프로그램

일시	교회명	장소	주요프로그램
27일 (주일)	12:00	명성교회	본교회 은혜교육관5층 환영오찬 및 사랑부 문화공연
	14:00	창동염광교회	본교회 아쿠아리움 관광
	15:50	사랑의교회	명동투어 한국문화체험활동
	17:30	지구촌교회	가평 필그림하우스 환영만찬 및 문화공연
28일(월)	10:00	명성교회	경복궁, 63빌딩 문화체험활동
	10:10	사랑의교회	국립민속박물관
	11:00	지구촌교회	롯데월드 문화체험활동
	14:00	창동염광교회	본교회 비전홀 한국전통문화체험활동
	19:00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 문화교류활동
29일(화)	12:00	전교회	평창선수촌 입촌

2.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설날잔치 <사랑 더하기, 밥 나누기>

- 가. 일 시 : 2013년 2월 9일(토) ~ 11일(월) 아침, 점심, 저녁 총 9식 <설 연휴 기간>
- 나. 장 소 : 동자동 성민교회(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6-1 / 한양전문학교 건물)
- 다. 대 상 : 서울역 동자동 지역 쪽방 주민 1,000세대 대상
- 라. 급식 인 원 : 매 식사 마다 동자동 쪽방주민 약 300명
- 마. 협력파트너 : 동자동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성민교회, 모리아교회 등
- 바. 참 여 교회 : 여의도순복음교회, 은평성결교회, 종교교회, 영락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삼성제일교회, 한소망교회, 꿈의교회(탈북민교회) 등
- 사. 자 원 봉사 : 매 식사마다 약 30여명 (연인원 270여명)
- 아. 세부내용

(1)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설날잔치 자원봉사자 헌신예배

(가) 일시 : 2013년 1월 30일(수) 19:15

(나) 장소 : 은평성결교회

(다) 내용 :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설날잔치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교육 및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라) 예배순서자 : 설교/손인웅 목사, 기도/박홍자 장로, 인사/최희범 목사, 안내/김종생 목사

(마) 참가교회 : 영락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은평성결교회, 종교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한소망교회, 삼성제일교회, 꿈의교회, 고향의봄합창단 14명

(2) 식사

(가) 배식시간 : 점심 12시 / 저녁 17시 (아침의 경우 전날 저녁식사때 포장하여 전달)

(나) 배식장소 : 성민교회 본당

(다) 급식인원 : 약 300명

(3) 자원봉사

(가) 봉사시간 : 배 식 : 점심 11시~14시, 저녁 16시~19시

도시락 : 점심 12시 ~ 14시, 저녁 16시 ~ 18시(10일)

(나) 봉사인원 : 매 식사당 30명

(다) 봉사내용 : 음식배분, 안내, 테이블 정리, 설거지, 뒷정리 등

* 도시락 봉사의 경우 다음날 아침 먹거리 포장 포함

	9일(토)	10일(일)	11일(월)
점심	거룩한빛광성교회	사랑방마을조합	영락교회
도시락	한소망교회	삼성제일교회(4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저녁	종교교회	탈북민봉사자 쪽방체험청년	은평성결교회

(4) 공연

(가) 일시 : 2013년 2월 10일(주일/설날) 16시 ~ 16시 40분(40분)

(나) 장소 : 성민교회 본당

(다) 내용 : 합창 - 고향의봄합창단(14명) 평화예술봉사단

탈북민, 쪽방 어르신에게 세배하기

임원 인사

3. 일본군 위안부·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도회

가. 일 시 : 2013년 2월 27일(수) 오전 10:30

나. 장 소 : 새에덴교회 본당

다. 협 력 : 한일기독교의원연맹

라. 주요순서

인 도 : 소강석 목사(KD특별사업단장)

기 념 사 : 김영진 대표회장(한일기독교의원연맹)

대표기도 :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장)

성경봉독 : 박홍자 장로(KD감사)

설 교 : 조용기 목사(KD 상임교문)

포 커 스 : 1. 일본군위안부 피해문제

- 영상(3-4분)·관련자 증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태효 목사

- 합심기도

2. 원폭피해자 문제

- 영상(3-4분)·관련자 증언 / 원폭피해자2세환우회 한정순 회장

- 합심기도

환 영 사 : 손인웅 목사(KD법인이사장)

인 사 : 김삼환 목사(KD대표회장)

격 려 사 : 황우여 의원(새누리당 대표)
 취지설명 :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선 언 문 : 최희범 목사(KD총무)
 축 도 : 장상 목사(前국무총리·한일기독교의원연맹 상임고문)
 마. 선언문

94주년 3.1절 기념 - 일본군'위안부'·원폭 피해자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회 선언문

오늘 우리는 94년 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났던 독립과 평화를 위한 만세운동인 3.1운동을 기념 하면서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국가폭력 앞에 희생된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및 가족과 함께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아울러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도하기 위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며, 정의를 세워나가시는 분(암5:24)이시며,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비통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분(시147:3) 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정의를 구하고, 억압받는 자를 도우며, 소외된 이를 변호하기를 당부하시는 분(사1:17)이십니다. 이 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가족을 위해 호소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미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기구들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세계 여러 국가의 결의를 통해 반인도주의적 범죄로 규정되었고,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의 국회의원, 언론, 심지어는 정부각료까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등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군국주의 패망 후 68년이 흘렀으나 아무런 역사적 반성 과 참회를 하지 않은 몰염치한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은 22년간 1062회가 넘는 수요시위를 통해 일본의 사죄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원폭피해자 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일제 시대 징용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주하 여 살다가 1945년 원자폭탄에 의해 피폭되신 분들입니다. 당시 약 7만 여명이 피폭을 당하여 4만 여명은 현지에서 사망 하였고, 나머지 3만 여명은 방사능에 피폭된 상태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너무 미비하여 지난 68년을 많은 질병과 고난 속에 생존권을 위협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원폭피해자의 자 녀들 중에도 피폭의 후유증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이미 많은 분들이 사망하거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임에도 적절한 보상이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 신이 피폭자의 자녀인 것이 알려져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폭자의 자녀임을 꼭꼭 숨겨왔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싸움을 묵묵히 감당하며 지난 세월을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일본군'위안부' 할머 니들과 원폭 피해자 가족과 함께 정의와 평화, 생명의 물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결정하며,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과 원폭 피해자 가족의 외침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한일기독교의원연맹과 KD한국교회회망봉사단이 주최하는 평화기도회에 참석한 우리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돌아보며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가족에게 하루빨리 사죄하고 배상하라!
-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일본군'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우리는 일본정부 사죄와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3. 2. 27

제94주년 3.1절 기념 - 일본군'위안부'·원폭 피해자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평화기도회 참가자 일동

4. 쪽방 주민과 함께하는 부활절 프로그램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가. 일시 : 2013년 3월 31일(부활절) 오후 3-5시(교회형편에 맞게 조정가능)

나. 장소 : 서울 동자동, 창신동, 돈의동, 영등포 등 주요쪽방지역, 부산 동구, 대전 쪽방지역

다. 참여교회 및 기관

서울 : 동자동·남대문로 / 도림교회(30일 오후 2시 도시락), 영락교회, 성민교회
돈의동 / 은평교회, 초동교회, 돈의동쪽방상담센터
창신동 / 동신교회, 창신동쪽방상담센터
영등포 / 광야교회(자체진행)

대전 : 대전영광교회

부산 : 부산 동구 쪽방상담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부산지회

라. 서울지역 행사 주요 내용

(1) 종로(돈의동)쪽방상담센터

(가) 일시 : 2013년 3월 31일(부활절) 오후 2시 30분

(나) 대상 : 돈의동쪽방주민 790가정

(다) 주민심방 : 주재옥(신체장애인), 최오레(시각장애인), 이해완(신체장애인)주민 심방 및 생계비지원

(라) 자원봉사 : 은평성결교회 교인 10명(심방팀 5명, 나눔팀 5명)

(2) 동대문쪽방상담센터

(가) 일시 : 2013년 3월 31일(부활절) 오후 4시

(나) 대상 : 동대문쪽방주민 300가정

(다) 자원봉사 : 동신교회 교인 10명

(3) 동자동 사랑방공제협동조합

(가) 일시 : 2013년 3월 30일(토) 오후 2시-4시

(나) 대상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지역 주민 400세대

(다) 내용 : 동자동 주민 400세대에 도시락 전달

(라) 자원봉사 : 도림교회

5. 다문화 아동 서울투어

가. 일시 : 2013년 4월26일(금) ~ 28일(일) (2박3일)

나. 인원 : 40명(인솔자 2명 포함)

다. 대상 : 전라남도지역 도서벽지 및 농어촌, 도시지역의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

라. 목적 : 어린이날 맞이하여 전라남도지역 섬마을, 농어촌 및 도서벽지, 도시 영세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여 감수성을 넓히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 정체성을 가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며, 나아가 좀 더 큰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도움

마. 일정

	26일(금)	27일(토)	28일(일)
오 전	-여수에서 출발 (09:00)	-경복궁, 광화문광장, 청계천 투어	-몽촌토성 관람 -점심식사 : 명성교회
오 후	-서울 도착(14:00) -국회의사당 -KBS 방송국 -63빌딩 -저녁식사(63빌딩) -환영행사	-점심식사(롯데월드) -롯데월드 -저녁식사(빽스 예정) -공연관람: 비밥공연 (언버벌 퍼포먼스)	-여수로 출발(13:00)

6. 독일 교회의날(Kirchentag) 참관단 파견

가. 일시 : 2013년 5월 1일(수)-8일(수)

나. 장소 : 독일 함부르크, 영국 런던

다. 인원 : 4명(사무국장, 사업국장, 해외국장, 여성국장)

라. 주제 : 네가 원하는 대로(As much as you need)(출16:18)

마. 전체일정

(1) 5/01(수) 개회예배 - 함부르크 시청 광장(Rathausmarkt)(독일어)

설교 : 안네 기디온(함부르크 북교회 목사) 출애굽기 16:11-18

예전 : 마틴 뢰벤스타인(함부르크교회)

음악 : 독일중부지역교회 관악단, 그라이프스발트 합창단,
함부르크청소년관현악단

해외참가자 환영식 - 함부르크상공회의소(Handelskammer)

저녁 행사(Evening of Encounters) - 함부르크 시청 광장

함부르크 교회 전통의 환영, 음악회 등이 진행

빛의 바다와 축복의시간 - 알스터호수 주변(Binnenalster)/항만 주변(Grasbrookhafen)

(2) 5/02(목) 바이블스터디 : 과부가 요구하는 정의(눅18:1-8)

- 마고트 케제만 교수(회년2017 신학 특별대사)

기조강의 : 강한 사회

- 요하킴 가우크(독일연방대통령), 새뮤얼 코흐(하노버 연극학생),

- 모니카 라브루이어(가정부 inclusion service),

- 라이너 슈미트(장애인올림픽메달리스트, 목사)

전시부스 관람

Playing with white fire

- 종교적이고 문화적 다양성으로 살기 / 아프리카인 가스펠의 밤

(3) 5/03(금) 바이블스터디 : 회년 / 어떻게 일할 것인가?

- 펠릭스 에크하르트 박사(지속가능개발연구자) Hall B5

예배 : 스와힐리 예배 - 투나이니 그룹

공연, 문화 프로그램

평화와 정의 콘서트

- (4) 5/03(토) 바이블스터디 : 오천명에게 나누고도 충분하다.
 - 로잔젤라 자르주르(중동복음주의교회협의회 총무) CCH, Saal 3
 주체별프로그램 / 독신, 연대, 가족 - 자본주의시대의 느낌들 - 성미카엘교회
 - 에바 일루즈 박사(사회학자, 예루살렘)
 문화공연 : Let us entertain you - 영 호프 합창단 : 크루제교회
 공연, 문화 프로그램 : Soul - as much as you need
- (5) 5/04(주일) 폐회예배 - 함부르크 시청사 광장
- (6) 5/06(월) 사회적기업런던(Social Enterprise London) 방문
 런던 인간도서관(Living Library London) 방문
- (7) 5/07(화) 런던 사회적협동조합 the Hub 방문
 영국교회 탐방(Westminster abbey)

바. 런던방문지

(1) Social Enterprise London

영국의 사회적기업 지원단체 중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 런던 (Social Enterprise London, SEL)은 1998년에 설립되었고, 런던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단체. 런던 내 사회적기업들의 네트워크 운영. 런던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3500여 개로, 이중 20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SEL 회원으로 등록. SEL은 영국 내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연합 모임 중 가장 큰 네트워크를 형성.

(2) Living Library London

200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Roskilde Festival에서 'Stop The Violence'라는 비정부 단체에 속한 다섯 명의 청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럽 곳곳에 존재하는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작은 행사를 기획. 그렇게 탄생한 것이 최초의 인간도서관. 런던 인간도서관은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이해를 고무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서관. 다만, 책 대신 사람들을, 특히 우리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을 법한 사람들을 빌려주는 도서관. 'Living Book'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그들이 속한 그룹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그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됨. Living Book의 예로는 장애인, 여성 소방관, 축구팬, 노숙자,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무슬림, 경찰관, 정치인, 채식주의자, 비만인 등.

(3) the Hub

'협동조합기업 허브'(The cooperative enterprise hub) :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이 주 업무인 협동조합. 500만 조합원이 소속된 영국의 최대 소비자협동조합인 '코오퍼러티브 그룹'(The Cooperative Group UK)이 만든 협동조합으로 2011년 만들어진 신생 협동조합. 협동조합기업 허브는 △사회적·윤리적 기여 △젊은이들의 활동 고양 △환경 보호와 공동체 발전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협동조합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음

7. 아이티 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실무진 아이티 방문

가. 출장기간 : (1) 2013년 5월 15일(수)-23일(목) / 고동훈

(2) 2013년 5월 23일(목)-31일(금) / 박승철, 최수철, 전해선

나. 출 장 자 : 고동훈 목사, 박승철 목사, 최수철 목사, 전해선 목사

다. 출장목적 : (1) 아이티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 준비

- (2)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역할분담
- (3) 지역주민 자활 교육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 (4) 지역커뮤니티 지원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8.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디아코니아 코리아 자문회의

- 가. 일시 : 2013년 6월 13일(목) 7:30
- 나. 장소 : 사무실
- 다. 참석 : 손인웅 김동배 황홍렬 조성돈 성석환 김종생 박승철 최수철
- 라. 목적 : 2010년 개최된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를 돌아보고 향후 진행될 한국교회의 섬김 사역을 집대성 할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모임으로, 독일교회의날, 영국 에딘버러 축제 등 유럽 교회의 경험을 참고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기획하기 위함

9. 원폭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좌담회

- 가. 일시 : 2013년 7월 4일(목) 오전 10-12시
- 나.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에이레네
- 다. 진행 :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수)
- 라. 토론 : 주영수 교수(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최봉태 변호사(변호사, 전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한정순 회장(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전은옥 사무국장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 지금 왜 원폭피해자인가?
- 원자폭탄 피해의 실태와 진상
- 원자폭탄 투하 꼭 해야만 했다. 가해와 책임 주체의 문제
- 원자폭탄의 다양한 피해
- 원폭2세환우 문제 및 유전성
- 일본과 한국의 역대 피폭자 운동과 지원정책 경과
- 향후 해결과제

10. 르포집 <핵, 끝나지 않은 형벌> 발간

- 가. 발간일 : 2013년 8월 6일(화)
- 나. 저 자 : 박동수 작가(전 국민일보 기자)
- 다. 부 수 : 500부
- 라. 내 용
 황강에 흐르는 눈물
 원폭피해자의 고통속으로
 형제의 비극
 모녀의 기막힌 현실
 젊은 부부의 암담한 미래

3세로 까지 이어진 고통
 자녀 없는 부부들의 아픔
 격리된 2세들의 고독
 지상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
 그때 일본내 조선인들에 무슨 일이...
 버려진 조선인 피폭자들
 눈물겨운 법정 투쟁
 수면위로 드러난 피폭자의 질병 상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아! 청년 김형률...그리고 2세 환우회
 특별법 제정운동. 그러나 거듭된 좌절
 일본보다 한국정부가 더 밋다?
 “우리의 몫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외침
 이제는 매듭을 짓자, 눈물을 닦아주자

11. WCC 디아코니아 신학 세미나

- 가. 일시 : 2013년 9월 2일(월) 오후 1시
- 나. 장소 : 동승교회 안디옥실
- 다. 대상 : 목회자, 봉사신학자, 봉사현장관계자 약50여명
- 라. 주최 : WCC한국준비위원회 기획위원회
- 마. 기획 : 오이코스생명물결
- 바. 실무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 사. 프로그램

WCC 문서 종합해설 / 박성원 목사(WCC 중앙위원, 한국준비위원회 기획위원장)

신학적 성찰 / 장상 박사(WCC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패널성찰1 - 교단 관점

이승열 목사(예장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신복현 목사(기감 사회선교부 부장)

이준모 목사(기장 한기장복지재단 사무국장)

조홍식 신부(성공회 사회선교국장)

패널성찰2 - 현장 관점

유장춘 교수(한동대) - 사회복지관점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 목회관점

송연순 목사(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 현장관점

김한승 신부(성공회 푸드뱅크) - 현장관점

12. 한국교회 이주민 기초조사 보고서 출판기념회

- 가. 일시 : 2013년 9월 5일 (목) 15:00
- 나. 장소 : 연동교회 북카페 다사랑
- 다. 위원 및 연구원

(1) 자문위원(가나다순)

김경태 목사 (예장통합, 구민교회)
김규복 목사 (예장통합, 빈들교회)
김성욱 교수 (합동, 총신대,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장)
김영애 선교사 (합동)
문창선 목사 (KIN)
박창현 교수 (기감, 한국선교신학회장)
성명옥 목사 (예장통합, 광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신상록 목사 (예성)
유해근 목사 (예장통합, 나섬교회)
이강현 목사 (천안)
이정호 신부 (성공회, 사회선교국장)
이철승 목사 (기감, 경남이주민센터)
이철우 목사 (기장,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이형로 목사 (유학생)
장창원 목사 (예장통합, 오산이주노동자문화센터)
전철한 목사 (기성)
조용희 목사 (예장통합, 전주근로자상담소)
최의팔 목사 (기장,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하춘실 목사 (예장통합, 인천엘림해외선교회)
한국염 목사 (기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명호 선교사 (합동)

(2) 운영위원

책임 - 황홍렬 목사(부산 장신대, 선교학)
수석 -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
박천웅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서기원 목사(DMN/Diaspora Mongolian Network)
공동 - 노일경 목사 (월곡교회)
정노아 목사(세계선교위 국내외국인사역 선교사)
한진상 교수(영동대)
한국교회희망봉사단 - 김종생 목사, 박승철 목사

(3) 실무위원

황홍렬 목사(부산 장신대, 선교학)
노일경 목사 (월곡교회)
박홍순 사무총장(호남신대 연구교수)
정노아 목사(세계선교위 국내외국인사역 선교사)
한진상 교수(영동대)
박승철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라. 출판기념회 순서

사 회 : 운영위원 김종생 목사
시작기도 : 러시아 고려인 동포사역 아차과나시이 목사
인사말씀 : 총무 최희범 목사

경과보고 : 책임연구원 황홍렬 목사
 총 평 : 서울사이버신대 장성진 교수
 (英에딘버러大 선교학 박사, 열방교회 이주민 및 빈민사역)
 축하공연 : YDMN (몽골대학생 찬양팀)
 축 사 1 : UCCP파송 에큐메니칼 코워커 존스 갈랑 선교사
 축 사 2 : 몽골제자교회 바이르마 목사
 증 정 : 수석연구원 서기원 목사가 바이르마 목사에게
 마침기도 : 수석연구원 박천웅 목사

13. 한국교회 이주민 기초조사 보고서 출판

- 가. 출판물명 : 한국 다문화사회에서의 이주민 선교 실태와 전망
 나. 체 제 : 신국판 152쪽
 다. 발행부수 : 500부
 라. 조사내용
- (1) 조사주제 : 한국 다문화사회에서의 이주민 선교 실태와 전망
 - (2) 조사목적 : 이주민 선교 기관/단체의 형태, 교회가 참여하는 이주민선교사역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부문별로(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유학생, 난민 등), 지역별, 교단별로 파악하여 이주민선교전략 수립 및 추후 심층조사의 기초 자료로 사용
 - (3) 조사기간 : 2012년 5월-2013년 3월
 - (4) 조사범위 : (1) 교회-교단, (2) 나라별 공동체, (3) 단체
 - (5) 조사대상 : 중국동포 55만, 이주노동자 40만, 유학생 10만, 결혼이민자 25만, 기타
 - (6) 조사방법 : 교단 대표자/실무자 회의/방문
 지역별 대표자·관계자 회의
 우편 및 전화로 부문별, 지역별 설문조사
 각 신학대학교/신학교 협조하에 신학생들을 통해 누락된 이주민 선교 교회나 단체 파악
- 마. 출판물 배포
- (1) 배포대상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신학대학 도서관 등 40개처 / 조사참여 교회·기관 280개처
 - (2) 배포방법 : 주소지로 일괄 택배발송

14. 교회와 지역자원봉사센터 연계·협력방안 정책토론회

- 가.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14:00~16:45
 나.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다. 주 제 : 교회와 지역자원봉사센터 연계·협력방안
 - 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단체·지역교회의 연계를 중심으로-
- 라. 참가대상 :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사회복지관계자·종교단체관계자, NGO·NPO, 학계 등
 마. 공동주최 : 한국자원봉사포럼·안산시자원봉사센터
 바. 주 관 : (사)돌보미연대

사. 후 원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 안산기독교총연합회 · T-broad 한빛방송
아. 협 찬 : 안산명성교회
자. 순 서

- 기조강연 - 교회의 사회적 책무와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김경동 /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한국자원봉사포럼 명예회장
- 발 제 - 자원봉사센터의 관점에서
박광식 /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 지정토론1 - 지역교회의 관점에서
김종생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 지정토론2 - 공동체운동의 관점에서
정재영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사례발표 - 연계협력사례
안산명성교회 ‘이웃사랑 나눔산타’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우 / 안산시단원구노인복지관장

15. 추석 사랑의 선물 나누기

가. 일시 : 2013년 9월 9일(월) ~ 18일(수)

나. 대상 : 8개 영역 99명

다. 내용

- (1) 쌍용자동차 희생자 유족
 - 3가정 직접 방문 전달 / 9.12(목)-14(토)
 - 심방 및 영양떡, 과일 전달
- (2) 연평도 포격 희생자 유족 2가정
 - 제철과일 전달
- (3) 쪽방 주민
 - 동자동 사랑방공제협동조합 추석행사장 방문/ 9월 18일(수)
 - 동자동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10명에게 흑마늘 엑기스 전달
 - 동자동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추석행사지원
- (4)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 콜트콜텍 7명 농성장 방문 / 9월 12일(목)
 - 과일 전달
- (5) 루게릭 병 등 희귀난치성 환자
 -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재활센터 경제취약계층 환자 2명 치료비 지원
- (6) 엔젤만 증후군 등 희귀난치성 환자
 - 엔젤만신드롬 부모모임 조애리 회장 집 심방 / 9월 11일(수)
 - 엔젤만 환자 중 취약계층 30명 선정, 어린이종합비타민 전달
- (7) 중독 재활 치료자
 - 안국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방문 / 9월 11일(수)
 - 도박 중독 재활 치료 중인 취약계층 20명 선정, 과일세트 전달
 - 기독교사회책임, 중독예방시민연대 연계
- (8) 원폭피해자 2세 환우

16.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아카데미

- 가. 일시 : 2013년 10월 10일(목) ~ 11월 14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4시 ~ 8시
- 나. 장소 : 영락교회 봉사관 502호
- 다. 주제 :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 라. 대상 : 디아코니아에 관심 있는 목회자 및 평신도 20여명
- 마. 주최 :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 목회사회학연구소
- 바. 전체일정표

	일시	주제	강사
1차	10월 10일	오리엔테이션 / 지역공동체 세우기의 필요성	목회사회학연구소
2차	10월 17일	지역교회와 지역공동체 세우기	목회사회학연구소
3차	10월 24일	지역공동체 세우기 전략과 방법론	임성규 목사 (서울시복지재단)
4차	10월 31일	지역공동체 현장 이야기	조주희 목사 (성암교회) 김문건 목사 (신광교회) 손주완 목사 (작은예수공동체)
5차	11월 07일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모델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목회사회학연구소
6차	11월 14일	지역조사 발표회 / 수료식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 커리큘럼

1차 / 10월 10일(목)

- 목표 : 참가자들과 진행자들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 여는 예배, 오리엔테이션
- 강의 : 지역공동체 세우기의 필요성 / 조성돈 교수

2차 / 10월 17일(목)

- 목표 : 본 과정의 핵심가치를 설명하고 이론 배경 강의
- 강의 : 지역교회와 지역공동체 세우기(신학과 사회학) / 정재영 교수

3차 / 10월 24일(목)

- 목표 : 교회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설명
- 강의 : 지역공동체 세우기 전략과 방법론(1시간 30분)
- 워크숍: 서울복지재단 임성규 목사

4차 / 10월 31일(목)

- 목표 :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룬 교회 현장 사례
-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 신광교회 김문건 목사, 작은예수공동체 손주완 목사

5차 / 11월 7일(목)

- 목표 : 지역공동체 형성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소개
- 강의 : 사회적 경제의 신학적 차원 / 조성돈 교수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 정재영 교수

6차 / 11월 14일(목)

- 목표 : 지역 조사와 사회복지사, 주민자치위원장 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Idea paper

- 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종합 토론.
- 토론 및 수료식 (성찬식 및 수료선물증정)

17. 인천지부 회장단 취임 및 발대식

- 가.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나. 장소 : 송현성결교회
다. 조직 : 대표회장 이종복 감독
사회복지봉사단 회장 간수웅
한국봉사단 회장 윤석호
북한봉사단 회장 원종휘
세계봉사단 회장 조광성

18. 직원 역량강화 교육

- 가. 강사초청
가-1
(1) 일 시 : 2013년 6월 14일(금) 9:00~13:00
(2) 강 사 : 한덕연
(3) 주 제 : 복지요결
가-2
(1) 일 시 : 2013년 7월 26일(금) 9:00~13:00
(2) 강 사 : 박재순
(3) 주 제 : 씨알사상
나. 독서토론회
(1) 일 시 : 2013년 7월 14일(금) 9:00~13:00
(2) 도서명 : 답을 내는 조직
(3) 발 표 : 사업국장 최수철 목사
다. 기관방문
(1) 일 시 : 2013년 7월 19일(금) 14:00~18:00
(2) 기관명 : 제정구기념사업회

19. 지구촌사랑나눔 화재피해 복구지원

- 가. 내 용 : 지구촌사랑나눔(대표 김해성 목사)의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무료급식소, 병원, 컴퓨터가 지난 8일 술에 취한 중국동포 김모씨(45세)의 방화로 인해 소실
나. 피해액 : 약 2억원(부상 이주노동자 치료비 1억원 포함)
다. 지 원 : 임원 및 회원교회 모금을 통해 일부지원 (지원액 22,770,000원)

20. 쪽방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

가. 쪽방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절 온천여행

- (1) 일시 : 20일(금)~21일(토), 23일(월)~24일(화)
- (2) 장소 : 수안보파크호텔
- (3) 대상 : 동자동 쪽방주민 80여명

나. 쪽방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절

- (1) 일시 : 2013년 12월 24일(화) 10시 ~ 15시 30분
- (2) 장소 : 용산구 동자동 소재 쪽방촌
- (3) 자원봉사 : 은평성결교회
- (4) 내용

일시		내용
24일(화)	10:00~11:30	오리엔테이션 선물 방문 증정(성민교회 1층)
	11:30~12:10	자원봉사자 점심식사
	12:30~14:00	명랑 시골 로맨스 ‘동백꽃’ (극단‘아리랑’)/(성민교회 본당)
	14:00~14:20	성탄 선물 및 도시락 증정
		붕어빵 나누기 (쪽방주민 동계 자활사업) *12월~2월까지
14:30~15:30	심방 및 축복기도	

21. 연변 청소년돌봄센터 지원

가. 취 지 : 부모가 없거나 편부모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 및 학업지원

나. 사업기간 :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 다. 사업주체 : (1) 한국교회희망봉사단
(2) (사)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3) 연변아리랑서로돕기창업협회

라. 내 용 : 매월 250만원씩 총 31,351,780원 및 도서 약 147권 지원

감 사 보 고 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대표회장 귀하

우리 감사인들은 2014년 1월 27일 10시 부터 귀 기관의 2013년도 중에 이루어진 재정 및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원칙을 준수 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4. 01. 28.

감사 김 광 한

(인)

감사 박 홍 자

(인)

별 첨 : 감사의견서 1부 끝.

감 사 의 견 서

1.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가. 감사에 임하면서 다음의 장부 및 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1) 수입 지출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입출금 전표
- 2) 각종 영수증 확인 및 편철상태
- 3) 수령한 세금계산서 편철보관상태
- 4) 각종 공문서 수발 및 정리상태
- 5) 지출 계정별로 타당하게 지출하였는지 등

나. 수입 및 지출(전년도 이월금포함)을 검토한바

2013년도 총 수입금액 : 923,562,607원

2013년도 총 지출금액 : 716,730,729원

잔 액 : 206,831,878원입니다.

(통장잔고197,730,625원 보유현금 및 사업비환전 9,101,253원)

※ 아이티사업 (2013년 2월 사)월드디아코니아로 사업 및 사업비 이관)

2013년도 총 수입금액 : 2,354,510,258원

2013년도 총 지출금액 : 2,353,122,194원

잔 액 : 1,388,064원입니다.

(잔액1,388,064원은 소득,주민세/4대보험료로 3월10일 납부처리 하였음)

다. 감사결과 월별 재정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각종 부책 등의 정리도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영수증 등 관계 자료를 연결 검토한바 정확하였습니다.

E. Korean Diakonia 2013년 결산보고

2013년 1월 ~ 12월 결산서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이월금

(단위 : 원)

관	항	목	2012년 이월금	산출근거 (비고)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364,639,286	전년 이월금

■ 수입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 (비고)
회비	회비	일반회비	112,190,053	임원 및 회원 정기회비
후원금	후원금	지정후원금	66,000,000	지정후원
		일반후원금	122,757,682	일반후원
		사업후원금	32,072,400	사업후원(성탄, 필리핀, 다큐영화지원금)
		경상비후원금	155,400,000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 지정후원
		물품후원금	5,313,780	연변청소년도서후원, 도시락후원
잡이익	잡이익	이자수입	260,024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잡이익	7,725	원단위 할인 외
		외환차익	749,033	환전시 외환차익
선납세금	선납세금	선납법인세	11,712,660	선납법인세 환급
전도금	전도금	전도금	316,400	사업관련 전도금(쪽방성탄행사)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29,207,960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부담분 공제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10,854,517	법인카드사용분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2,500,000	이주민기초조사연구비5월분(황홍렬외4인)반환
사업비이관	사업비이관	WD사업비이관	9,677,887	WD직원보험료 이관(양도추가금반환분)
총 계			559,020,121	

■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 (비고)
사무비	운영비	임대관리비	37,784,420	사무실, 복사기 임대관리비
		통신비	3,224,365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사용료 등
		도서인쇄비	1,145,000	회보제작, 신문구독료, 도서 구입
		소모품비	1,528,970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여비교통비	2,883,000	월정/시간주차료
		지급수수료	7,410,740	CMS 관련 / 회계사기장 / 송금 수수료 등
		제세공과금	15,849,275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275,000	차량정비비
		운반비	47,850	퀵, 택배 사용료
		잡비	184,610	기타소득세(이주민기초조사.디아코니아아카데미)
		기타보증금	400,000	복합기 임대보증금
		수선비	160,000	컴퓨터 고장수리
		소 계	70,893,230	
	인건비	급여	156,784,274	직원 급여
		상여	95,547,777	직원 상여
		퇴직급여	20,249,083	퇴직 급여
		복리후생비	18,947,280	건강보험료, 직원 및 손님 식대 외
소 계		291,528,414		
합 계			362,421,644	

■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 (비고)	
사업비	구호사업비	국내구호(서해안)	800,000	2013바다의날 생태기행 지원비	
		해외구호(자원봉사)	12,440	해외파견 자원봉사자 지원(12.05오류건정정)	
		소 계	812,440		
	기획사업비	설날사랑큰잔치	16,679,715	설날사랑큰잔치 행사 진행 비용	
		정대협사업지원	18,271,000	정대협 사업지원 비용	
		원폭및방사능누출피해자지원사업	11,570,040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진행 비용	
		영역별실태조사	24,385,310	한국자원봉사포럼연구비, 이주민실태조사 경비	
		빈곤계층실태조사	76,400	빈곤계층실태조사 사업 진행 비용	
		주거위기가정돕기	60,700	주거위기가정돕기 사업진행 비용	
		농어촌자원봉사	1,505,545	농어촌하계봉사 진행 비용	
		중독예방캠페인	6,000,000	중독예방캠페인 사업 진행 비용	
		다문화큰잔치	23,770,000	지구촌사랑나눔(이주민)행사 진행 비용	
		연변청소년돕기	31,366,080	연변청소년돕기 사업 진행 비용	
		디아코니아아카데미	4,045,090	디아코니아아카데미 사업 진행 비용	
		디아코니아센터설립.지원	20,362,500	디아코니아센터지원사업 진행 경비	
		부활절사업	11,646,700	부활절 행사 진행 비용	
		거리의성탄절	24,559,070	거리의성탄절 행사 진행 비용	
		WCC총회협력사업	665,170	WCC총회협력사업 진행 비용	
		사회복지엑스포기획	837,000	사회복지EXPO자문회의 경비	
		필리핀재해구호사업	21,796,827	필리핀재해구호사업현지실사진행비용	
		소 계	217,597,147		
		기타사업	사업추진비	8,838,560	기타사업 추진 비용
			행사비	3,419,940	2013총회 진행 비용
	직원교육사업		2,366,720	직원 역량강화교육지원 외	
	홍보사업		4,640,120	후원사역보고, 회보발송 비용	
	기타사업		7,578,700	유관기관 행사후원금 및 연회비 외	
	WD사업비이관		50,000,000	월드디아코니아사업비 이관	
	소 계	76,844,040			
	조직사업비	분야별사업단조직	600,000	분야별사업단 조직 준비비	
		영역별협의체조직	600,000	영역별협의체 조직 준비비	
		한교사협 설립	603,000	한국교회사회봉사협의회 설립 준비비	
		지회강화및설립	1,700,000	지회강화 및 설립 준비비	
		네트워크강화	8,203,217	네트워크강화 및 준비비 및 유관기관 강화비	
		자원봉사네트워크조직	859,560	자원봉사 네트워크강화 경비 외	
		사회복지네트워크조직	5,256,870	2013추석사랑의선물전달 사업 경비	
		소 계	17,822,647		
	합 계	313,076,274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선납세금	25,000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 계	25,000	
	합 계	25,00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52,725	외환차손 외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29,375,655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공제분 납부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11,576,231	법인카드사용분
	총 계			716,827,529	

2013년 결산	이월금	364,639,286
	총수입	559,020,121
	총지출	716,827,529
	잔액	206,831,878
지정기금	기본자산	33,620,000
	북한재해구호	107,826,561
	퇴직연금적립금	18,429,421
총잔액		46,955,896

2013년 아이티 결산서
(2013년 1월 1일 ~ 2013년 2월 28일)

■ 이월금 (단위 : 원)

관	항	목	2012년 이월금	산출근거 (비고)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2,334,508,238	전년이월금

■ 수입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 (비고)
후원금	후원금	지정후원금	300,000	KBS방영-제키지정후원금
		소 계	300,000	
		합 계	300,000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14,873,289	정기예금(보통예금) 이자수입
		잡수입	11,959	MMF에 대한 평가차액 및 전화료 원단위 할인
		소 계	14,885,248	
		합 계	14,885,248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4,396,782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
		소 계	4,396,782	
		합 계	4,396,782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419,990	인건비에 대한 세금 공제분
		소 계	419,990	
		합 계	419,990	
총 계			20,002,020	

■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 (비고)	
사무비	운영비	여비교통비	125,000	업무관련 이동시 교통비, 공항버스비	
		지급수수료	6,000	은행업무 수수료	
		도서인쇄비	80,000	점자명함제작비	
		소 계	211,000		
	인건비	급여	4,501,351	직원급여	
		상여	1,555,676	직원상여	
		일용직급여	229,600	해원협 Sphere training 참가비	
		복리후생비	2,596,572	직원 식사비 및 부식구입비	
		소 계	8,883,199		
	출장비	해외출장비	2,969,829	해외출장 숙박 및 항공료, 출장일비	
		소 계	2,969,829		
	합 계			12,064,028	
	사업비	현장상황실 운영비	소모품비(현)	997,409	소모품 및 센터집기구입
접대비(현)			245,920	유관기관 접대 및 경조사비	
지급수수료(현)			589,298	변호사선임, 비자발급, 현지은행수수료 외	
업무추진비(현)			1,595,123	업무관련 미팅시 식사비	
차량유지비(현)			2,187,260	자동차 주유비 및 차량부품구입비 등	
통신비(현)			314,594	현장상황실 인터넷 및 이동전화 사용료	
소 계			5,929,604		
학교건축 사업		학교건축사업진행비	150,000	학교설립제출용(디렉터건강검진료)	
		소 계	150,000		
기타사업		WD창립총회	320,000	2013총회 진행비	
		WD사업이관	2,325,927,948	월드디아코니아 사업비 이관	
		기타사업비	684,208	르까에산위학교후원(3개월분)	
		소 계	2,326,932,156		
합 계			2,333,011,760		

■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 (비고)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4,781,476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
		소 계	4,781,476	
	합 계		4,781,476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1,198,360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
		소 계	1,198,360	
	합 계		1,198,360	
선납세금	선납세금	선납법인세	2,066,570	이자수입에 대한 선납법인세
		소 계	2,066,570	
	합 계		2,066,570	
총 계			2,353,122,194	

이 월 금	2,334,508,238
총 수 입	20,002,020
총 지 출	2,353,122,194
잔 액	1,388,064

F. Korean Diakonia 2014년 사업계획

1. 분야별·사역별·사업별 네트워크 강화

가. 교단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 한국교회사회봉사협의회 활동 활성화
- 교단연합 사회봉사 사업 개발
- 복지·봉사 영역 사안별 한국교회 입장 대변 및 발표
- 한국교회 긴급구호 네트워크 구성

나. 복지단체 네트워크 강화

- 복지대상별 한국교회 조직화 사업
- 한국교회 복지단체 편람 제작 추진

다. 전국 각 지부 네트워크 강화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전국 각 지부 개편과 강화
- 한국교회봉사단 전국 지회 조직 및 활성화
- 국내 재해 긴급구호를 위한 네트워크 편성 - 지역별 긴급구호 네트워크
- 재해구호 매뉴얼 제작

라. 회원교회 사업별·사역별 네트워크 강화

- 디아코니아 아카데미 개설
- 디아코니아 목회자 모임 주선
- 사업별 회원교회 TFT 가동

마. 현장 네트워크 강화

- 사업별 사역현장 네트워크 강화
- 회원교회와 사역현장 네트워크 강화
- 기독교평화운동 네트워크 연대

2. KD 기관 정체성 및 사역 강화

가. KD 사명선언문 및 정책문서 작성

- KD 사명의 신학적·신앙적 위치 규명
- KD 사역의 핵심가치와 사역원칙 표명
- KD 정책문서 작성

나. 회원교회 Diakonia 역량 강화

- 현장중심의 회원교회 네트워크·사업역량 육성
- 목회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시스템 운영
- 상시적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단 창설

다. 한국교회 Diakonia 역량 강화

- Diakonia를 주제로 한 각종 연구서적 출간
- 전략적 강좌-세미나-워크숍-출판 연계 사업 시행
- 기관 실무자/교회 복지·봉사 담당자 Diakonia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Diakonia 영성개발 코스웍 개설 및 교육교재 개발

라. 디아코니아 코리아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Diakonia Korea 조직위원회 구성
- 교회와 사역현장을 연결하는 “Diakonia Korea Campaign” 전개
- 지역공동체 ‘디아코니아 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

3.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 가. 대북지원단체 및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조 확보
 -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노스코리아 디아코니아 설립
 - 민간단체 북한 구호기관 교류 및 북민협 회원가입
 -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신학적 배경 구축
- 나. 탈북민 지원사업
 - 국내 탈북민 자활지원 및 사회봉사 참여 견인
 - 연변 희망2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탈북 모자가정 어머니학교 개설
- 다. 북한주민 및 탈북민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영역 개발

4. 복지사각지대 개발 및 평화·화해사역 전개

- 가. 쪽방 주민 자활지원
 - 쪽방촌 공동세탁장 설치 및 운영
 - 쪽방주민 자활지원사업 전개
 - 쪽방주민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및 교육사업 전개
- 나. 다문화 이주민 정착지원
 - 여성 이주민 쉼터 운영
 - 이주민실태 심층조사 실시
- 다. 루게릭, 엔젤만 증후군 등 난치성 환자 지원
- 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사업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연대사업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쉼터 ‘우리집’ 운영지원
- 마. 원폭피해자 지원
 - 원폭피해자 및 자녀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참여
 - 한국원폭2세환우회 연대
 - 원폭피해자의 실상을 알리는 영상제작, 서적 출판
- 바. 사회적 트라우마 힐링 마스터 훈련캠프 설치
- 사.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 문화공연 개최 및 지원
 - 인문학 강좌 개설
 - 추석맞이 소외계층 품기 캠페인

G. Korean Diakonia 2014년 예산(안)

Korean Diakonia 2014년 예산(안)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수입부

관	항	2014년 예산금액
회비	회비	120,000,000
후원금	후원금	380,000,000
보조금	보조금	40,000,000
잡수입	잡수입	1,000,000
총 계		541,000,000

■ 지출부

관	구분	2014년 예산금액
사무비	운영비	50,000,000
	인건비	200,000,000
	소계	250,000,000
사업비	구호사업비	30,000,000
	조직사업비	17,000,000
	쪽방촌 주민 자활지원	30,000,000
	다문화 이주민 정착 지원	25,000,0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15,000,000
	원폭 및 방사능 누출 피해자 지원	10,000,000
	연변 청소년 지원 사업	30,000,000
	디아코니아전문가·실무자 과정 개설	20,000,000
	2015사회복지엑스포기획	5,000,000
	연구서적 출간 및 세미나개최	25,000,000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설,부활절,성탄절)	84,000,000
소계	291,000,000	
총계	541,000,000	

H. 부록

1.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Korean Council of Christian Social Welfare’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에 둔다.
- ② 법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법인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회를 둔다.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
 2. 대전지회: 대전시 서구 정림동 637번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내
 3. 부산 경남지회: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1동 697-2 반송종합사회복지관내
 4. 대구 경북지회: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월드비전 대구경북지부 내
 5. 광주 전남지회: 광주시 오치2동 1003번지 오치사회종합복지관내
 6. 인천지회: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9-6
 7. 경기남지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50-10
 8. 충북지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35번지
 9. 충남지회: 충남 천안시 백석동 11-12번지
 10. 울산지회: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 346번지
 11. 경기서지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354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2.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3. 기독교 기관의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교육
4. 자원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5. 홍보 및 출판
6.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한 엑스포 및 총람편찬사업
7. 국내·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8. 국내외 기부 문화 확산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교단회원: 기독교 각 교단
- 2) 단체회원: 교회 및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 3) 지역협의회원: 전국 시도별 지역협의회
- 4) 개인회원: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③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감사 2인
4.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19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전문사업단을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2조(대의원)

①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실행위원,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②1항에 해당되지 않은 회원단체에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 부서

제3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2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6-3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사업단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8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06년 9월 28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7월 10일 개정

2009년 5월 12일 개정

2. 회칙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라 하며 대외호칭은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교회의 본래적 사명인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 이웃에게는 평화를 · 한국교회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사회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2. 국내 · 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3.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4. 한국교회 사회복지엑스포 및 총람 편찬
5. 기부 문화 확산 사업
6. 기독교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 활동
7. 국내 · 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홍보 및 출판
9.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교단, 교회,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위원회에서 가입이 허락되어야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발언권과 의안 제출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의결권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과 제반 규정 준수
2. 본회 의결기구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반 부담금 납부

제3장 중앙위원회

제8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9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교단, 교회, 직능, 지역별 대표 200여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임원회의 추천과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10조 (직무) 중앙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2. 법인이사 인준
3. 실행위원 인준
4. 임원 및 감사 인준
5. 회칙개정
6. 회원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
7. 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8.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9. 임시 중앙위원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11조 (소집)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1/3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정족수) ① 중앙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실행위원회

제13조 (권한) 본회의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두며 중앙위원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대행한다.

제14조 (구성) ① 본회의 회원 중 교단·교회·단체(직능, 지역)·각계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그 수는 30명 내외로 한다.

② 실행위원은 임원회가 추천하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5조 (직무) 실행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2. 임원 및 감사 선임
3. 사무총장 선임
4. 회칙 개정 심의
5.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 의결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심의
7.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8. 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및 의결

제16조 (소집) 실행위원회는 대표회장이 분기별로 소집하며 7일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성수) ① 실행위원회는 출석위원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회 및 감사

제18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으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1. 대표회장 : 1인
2. 공동대표 : 약간 명
3. 단 장 : 1인
4. 총 무 : 1인
4. 서 기 : 1인, 부서기 : 1인
5. 회 계 : 1인, 부회계 : 1인

제19조 (선출과 임기) ① 임원의 선출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총무는 임원회가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 임원과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표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 나. 공동대표 :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대표회장이 지명한 공동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단,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 다. 단 장 : 본회의 각종 사업 추진을 관장한다.
 - 라. 총 무 :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에 참석한다.
 - 마. 서 기 : 회의록과 관계 문서의 기록과 보관 및 관리하는 일을 한다.
 - 바. 부 서 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사. 회 계 :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 아. 부 회 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2.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
 - 나. 각 위원회의 사업을 독려 · 지원
 - 다.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결의

제21조 (소집) ① 임원회는 필요시 대표회장이 소집하며 7일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할 시는 전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소집할 수 있으나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22조 (성수) ① 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의 선임 등) ①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 · 실행위원회 · 임원회를 감사하며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2. 사무처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3. 감사결과를 임원회, 실행위원회,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4조 (구성과 운영) ① 본회 법인체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이라 칭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은 별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7 장 위원회 및 지회

제25조 (기획위원회) 본회의 장·단기 발전과 본회가 해야 할 과제를 연구하고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은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2. 기획위원의 수는 9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기획위원회는 수시로 회집하며 계획서(안)를 대표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위원회)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1. 사업위원회
 - 가. 재해구호위원회
 - 나. 사회복지위원회
 - 다. 학술위원회
 - 다. 국제위원회
 - 라. 자원봉사위원회
 - 마. 북한지원사업위원회
 - 사. 홍보 · 출판위원회
 - 아. 사회복지엑스포위원회
2. 각 위원회는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과 조직 구성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지회) ① 본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 · 도 지회를 두도록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자문회의 및 협의회

제28조 (자문회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회의를 둔다.

1. 고문단 : 교계의 원로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2. 자문위원회 : 교단장 및 단체장

제29조 (협의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협력적으로 전개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1. 지역협의회 : 본회의 지회 대표로 구성하여 사업과 운영의 네트워크를 이룬다.
2. 유관기관 협의회 : 봉사와 복지 관련 기관과 유기적 연대를 이루도록 한다.
3. 총무단협의회 : 유관 교단이나 기관의 사회봉사 관련 실무자로 구성하며 본회 업무를 협의한다.

제 9 장 재 정

제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기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후원을 위한 기부금
3. 교회 · 기관 · 단체 및 개인의 찬조금
4. 기타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0장 사무처

제32조 (설치)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두어 상근케 한다.

제33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임원회가 추천하고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총무를 보좌하며 직원의 업무를 관장하며 제반회의에 참석한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직원)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제11장 보칙

제35조 (회칙의 개정) ① 개정 발의는 실행위원회·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회칙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6조 (세칙 및 제반규정) ① 본회 회칙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과 제반규정으로 정한다.

② 운영세칙과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행위원회와 임원회가 발의한다.
2. 중앙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7조 (회의록 등) 임원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해당 회의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38조 (기관의 설치 및 협력) 본회의 목적사업 시행과 추진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치하거나 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39조 (미비사항의 보완)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보완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5월 12일 제정
2010년 1월 29일 개정